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부서명 : 감사담당관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조치사항				비고
	총건수	시정	개선	권고	
합 계	15	3	3	9	
조치완료	5	1	2	2	
조 치 중	9	1	1	7	
장기검토	0	0	0	0	
조치불가	1	1	0	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권고	5. 구미시 외부청렴도 취약 분석 및 대책 필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시 외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취약한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계약 관리, 인허가 분야 등의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서한문 발송,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겠음.	조치중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권고	6.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적 자세 필요 ○ 의회의 자료요구는 시민의 권한을 대신 하는 의원의 당연한 권리임. ○ 요구자료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기한엄수 및 정확한 자료 제출 등 협조적 자세 필요.	○ 의원 자료제출 요구 시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또한 자료에 누락사항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정책기획과 답변】 ○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기한을 필히 엄수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겠음.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권고	7. 지역건설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없는 건설 현장 소통 채널 운영 등 지역건설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 추진.	- 금년 4월 개최된 건설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청렴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부패 방지 의지를 제고하였음. -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임.	조치중
	권고	8. 공공시설 건축 업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공공시설과에 일원화된 공공시설 건축 업무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 노력.	- 공공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건축 공사에 대하여 일상감사(중간검사) 및 상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 관련 규정 준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 품질·안전 관리 등 하자 없는 공공 건축물 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실시 예정임.	조치중
	권고	9. 징계보다는 교육을 초점으로 감사 실시 8, 9급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하여 징계보다는 교육을 초점으로 감사 실시.	- 자체 종합감사 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항은 징계 대신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감사사례집 등의 교육 자료를 배포·활용 하여 각종 업무집행의 오류를 예방하겠음.	조치완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총무과)	시정	10. 공무원 복무관리 계획 수립 ○ 집행기관 공무원 시간외근무, 출장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 필요. ○ 각종 수당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의회 공유 철저.	○ 복무점검의 경우 연중 4~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외근무의 경우 '23. 6월 「초과 근무 부정행위 근절 강화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음. 【총무과 답변】 ○ 복무감사 시 감사담당관에 직원 복무 내역 제공. ○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방지 및 부정수령 문제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추진.	조치완료
감사담당관	시정	11. 부실공사 방지 계획 수립 철저 ○ 시민운동장 육상트랙과 최근 준공한 3개 국민체육센터에 하자가 발생함. 이에 대하여 준공시점에 근무하던 하급 담당공무원이 징계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음. ○ 하자 발생 시 공사 중지 등 예방 관리 감독을 위한 계획 수립 철저.	○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권고	12.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점검 ○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의 최근 개최실적이 미미함. ○ 조례가 2007년 제정된 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으므로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 점검 필요.	○ 7월 중 위원회 정비 후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개최 예정(9~10월) ○ 본 조례는 구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필수 조례이며,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화가 필요할 경우 차후 개정하도록 하겠음.	조치중
	권고	13.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시스템 개선 필요 ○ 2억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각각 시행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 ○ 성격이 유사한 감사를 중복실시하지 않도록 한번에 감사를 시행하거나 명확한 업무분장 등 감사 시스템 개선 필요.	○ 계약원가심사와 일상감사는 각각 별도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나, 계약원가심사와 일상감사가 중복되는 심사건에 대하여는 중복심사 되지 않도록 일괄처리하고 있음.	조치완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개선	14. 공무원 조직 내부 갑질행위 엄중 조치 ○ 공무원 조직 내부 갑질행위에 대하여 적극 청취하고, 가해직원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하여 공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 철저.	○ '23.4.5. 제정된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갑질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갑질 피해 신고 시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음.	조치완료
	권고	15. 시 산하기관 채용 및 복무 관련 중점 관리 ○ 구미도시공사 등 시 산하기관 채용에 관한 지적사항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 ○ 시 산하기관 채용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	○ 시 산하기관 채용점검 실시예정 - 시 기 : '24년 하반기 중 - 대 상 : 구미도시공사 등 3개 기관 - 내 용 : 정규(계약)직 채용 관련 전반 ○ 시 산하기관 복무점검 - 시 복무점검(연5~6회) 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음.	조치중
	개선	16.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읍면동장 교육 실시 ○ 읍면동 종합감사 시 매년 유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음. 한번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동장 교육 실시 필요.	○ 읍면동 자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 등을 수합하여, 같은 잘못과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령을 진행하고 있음.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장 대상 업무연찬을 강화할 예정.	조치완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권고	17. 국유지, 하천부지, 점용부지 실태 전수조사 ○ 국유지, 하천부지, 점용부지에 대한 불법 사용이 만연해 있음.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필요.	○ 전 부서에 부서별 관리 중인 국공유지 등에 대한 점용현황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조치중
감사담당관 (예산재정과)	개선	18.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보조금 지원 관련 부패 경험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대책이 필요함. ○ 문화행사 보조사업 등 보조금 전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관련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구미시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에 따라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 보조금의 운영이 관리기준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 감사 추진시 사업 수행 전단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하여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예산재정과 답변】 ○ 각 보조사업 행사의 규모, 성격, 장소 등에 따라 사업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부서에 사업 집행시 여러 견적을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총 무 과) (대중교통과)	시정	19.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 관련 공무원 처분 취소 ○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 조치 시정	○ 해당 건은 '20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별도 당사자의 소청없이 최종종결된 사안으로 처분 취소가 불가함. 【참고】 관련 징계 처리내역 - 징계 처분요구('20년 道 종합감사) : '21.2.10. - 징계요구 재심의 요청 : '21.3.5. - 징계요구 재심의 기각 : '21.5.3. - 징계요구(道 인사위) : '21.5.7. - 징계의결(불문경고) : '21.6.23. - 문책통보(불문경고) : '21.6.30.	조치불가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감사담당관 (총 무 과) (대중교통과)	시정	19.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 관련 공무원 처분 취소 ○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 조치 시정	【총무과 답변】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의거 징계처분에 따른 불복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이후 당사자로부터 청구가 없어 구제 시효가 만료됨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집행을 취소 하거나 변경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 관련 처분 당시 혐의(성실의무위반)는 징계처분 취소에 효과를 미칠 만큼의 특단의 사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치불가